한국어교육센터운영규정 9-1-2

규정번호 9-1-2
제정일자 2011.1.1
최근개정 2025.9.29
개정차수 8차 개정
관리부서 한국어교육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27)

제2조(기능) ① 센터는 우리대학에 수학 중이거나 본 과정에 입학하기에 앞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규 과정 및 특별 과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18.08.27)

② 센터는 해외 자매대학 및 협약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필요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03., 2022.02.21.,2025.9.29.)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02.21.,2025.9.29.)

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5.9.29.)

제4조(조직) <삭제(2025.9.29.)>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8.08.27)

1.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교재 개발
2.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한국어 강사 위촉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시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5. 한국어 특강 실시
6. 한국어 모의 토픽 시험 실시
7. 한국어 경진 대회 실시
8. 한국어 학습 상담
9. 해외 자매 대학의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 제공
10. 해외 자매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초빙 세미나 개최
11. 해외 한국어교육 전담관리(파견 한국어강사 관리 포함)
12. 기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신설 2025.9.29.)

제6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둔다.(조항 신설 2022.06.08.)

1.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및 주요 정책 수립
3.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신설 2025.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국어교육센터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재정은 우리대학 관련 사업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영한다.(조번호변경 2022.06.08.)

제8조(운영세칙) 센터운영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2.21., 조번호변경 2022.06.08)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어교육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 을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 제5조제12호, 제6조제2항·제3항)